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072
----------	------

제안연월일 : 2020.12.17.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종무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92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94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대상에 공공준주택을 추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40%까지 3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에 공공준주택을 추가함(안 제55조제4항제2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별표 2] 제2호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의 상한을 4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제2호마목 신설, 안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2호 중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의2의 공공준주택”으로 한다.

[별표 2]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부지 확보비율 상한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2]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까지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 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	④ ----- ----- -----.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1호 본문에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u>공공임대 주택</u>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4호의 <u>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u> 및 제5호의 <u>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u> 은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 트로 한다.	2. ----- ----- <u>공공임대 주택</u> 및 같은 법 제2조의2의 <u>공공준 주택</u> ----- ----- -----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⑤ ~ ㉓ (생 략)	⑤ ~ ㉓ (현행과 같음)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